

청주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4049 판결 [대부임차권확인 청구의 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404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가단3597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김한근, 석동규, 전희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7. 2.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가단3597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충북 괴산군 B 임야 156,969㎡, C 임야 1,593㎡에 관하여 대부자 피고, 수대부자 원고, 대부기간 2016. 3. 28.부터 2021. 3. 27.까지 5년, 연 임료 1,872,640원으로 하는 대부임차권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대부계약의 존재 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대부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대부임차권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1. 기초사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 사건 대부계약의 종료

원고는 2021.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의 기간갱신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9.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 취소 사유와 동일한 대부조건위반 등의 사유로 기간갱신이 불가하고,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대부기간 연장 의사가 없으므로

기간만료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이 소멸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21. 4.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

○ 제4쪽 제10행부터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40, 41호증, 을 제1, 3, 26,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과거의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확인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2016. 3. 28.부터 2021. 3. 27.까지 이 사건 대부계약에 기한 대부임차권이 존재하였음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 갱신여부가 결정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임차권 존재여부가 대부계약 갱신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주장도 없을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1. 3. 9.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기간 만료로 이 사건 대부계약이 소멸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병렬, 판사 김환권, 판사 전보람